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 [펀드코드 : K55311B83962]

| 투자 위험 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 채권 투자에 따른 **금리 변동위험** 및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플러스 단기채권 증권투자신탁1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며, 듀레이션을 1년 이하 수준으로 조절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대비합니다.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 | | | | | | |
| 투자비용 | 명칭 (클래스)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수수료선취 - 오프라인형(A) | 납입금액의 0.2%이내 | 0.28% | 0.151% | 0.35% | 49 | 79 | 110 | 178 | 377 |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 없음 | 0.38% | 0.251% | 0.40% | 40 | 82 | 126 | 221 | 497 |
| | 수수료선취 - 온라인형(Ae) | 납입금액의 0.1%이내 | 0.20% | 0.071% | 0.33% | 32 | 55 | 79 | 130 | 282 |
| | 수수료미징구 - 온라인형(Ce) | 없음 | 0.25% | 0.121% | 0.30% | 27 | 55 | 85 | 148 | 335 |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출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되는 경과시점 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22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종류 A(종류Ae)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2%(0.1%)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2%(0.1%)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 | | | | | | | | |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 구분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 19.12.07 ~ 20.12.06 | 18.12.07 ~ 20.12.06 | 17.12.07 ~ 20.12.06 | 15.12.07 ~ 20.12.06 | | | | |
| | 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형(C)(%) | 2015-11-05 | 1.50 | 1.62 | 1.67 | 1.56 | 1.55 | | | |
| | 비교지수(%) | - | 1.23 | 1.52 | 1.63 | 1.60 | 1.60 | | | |
| 수익률 변동성(%) | - | 0.13 | 0.10 | 0.09 | 0.09 | 0.09 | | | | |
| | (주1) 비교지수 : KIS종합지수3M-6M x 90% + Call x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운용전문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동종집합투자기구 | 운용 | | | | |

| 인력 | 연평균 수익률(채권형) | 경력년수 | 집합투자 기구 수 | | 운용규모 |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7개 | 51,424억원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 | | | | | | | | 1.86% | 2.00% |
| 이관홍 1968 | 책임(전무) | 22.7년 | | | | | | |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 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리변동위험 |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채무자, 투자대상회사 또는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의 신용등급의 변화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산상의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환매청구시 위험 |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
| 매입 방법 |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p> | 환매 방법 |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
|--------------|---|--------------|---|

| | | | |
|--------|---|--|---|
| | 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plus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과세 |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수익자 |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한도 ②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③세액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세액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td> <td rowspan="2">400만원 (700만원)</td> <td rowspan="2">600만원 (900만원)</td> <td>15%</td> </tr> <tr> <td>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td> <td>12%</td> </tr> <tr> <td>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td> <td colspan="2">300만원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 |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세액공제율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 12% |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 |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세액공제율 | | | | | | | | | | | | | | |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 | | | | | | | | | | | | | |
|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 | | 12% | | | | | | | | | | | | | | | |
|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별도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 | | | | | | | | | | | | | | |
| | | ④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 | | | | | | | | | | | | | |

⑤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⑥연금외 수령시 과세

-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기준 적용
 -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①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세액공제율 |
|------------------------|------------------------------|--|-------|
|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 | | |
|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 12% |

※ 지방소득세 별도

※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2조에 의한 전환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

플러스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plu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0년 12월 18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 수수료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

| | | |
|-------|------------|--|
| 수수료 | 선취(A) |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 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11개 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 |
| 판매 경로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 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1)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 (I)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펀드 등 (F) | 펀드 및 기관투자자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W) | Wrap Account용(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조세특례 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plu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plusasset.com)